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9,075,150	16,172,255
일반회계	532,876,265	15,986,288
특별회계	6,198,885	185,967
기타특별회계	6,198,885	185,96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995,387	29,86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60,712	7,821
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753,750	22,613
주차장특별회계	4,186,107	125,583
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	2,929	8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음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08,031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